

제422회 정례회

'24. 11. 19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4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4일

3. 제안이유

-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 :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 - 의료원별 경영 정상화까지 소요 예상금액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지원 후 도에서 이자보전을 통한 의료원 재정부담 경감
-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 - ※ '23. 11. ~ 12. 지역개발기금 220억원 융자(청주 120억, 충주 100억)

-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, 발생이자(3%)
- 도, 5년 거치기간 이자만 지원('24. ~ '28.)
- 출연금액 : 660,000천원 (도비 100%)
 - 청주의료원 360,000천원, 충주의료원 300,000천원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가. 제출배경

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청주·충주의료원이 2022년 6월 전담병원 해제 이후 심각한 경영 악화에 직면함.
 -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양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도모 및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제15조제1항제5호⁵⁾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⁶⁾에 따라 2023년 9월,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및 연이율 3%의 조건으로 220억을 융자 지원함.
 - ※융자금(총 220억원): 청주의료원 120억원, 충주의료원 100억원
- 그러나 이후에도 양 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는 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영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2025년도 이자분(연이율 3%)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함.
- 이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⁷⁾에 따라 출연 전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것임.

5) 제15조(융자대상)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

6) 제7조(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) ① 조례 제15조 융자대상 사업의 융자이율을 연리 3퍼센트로 한다.

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

7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※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현황

- 1) 설치근거: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
- 2) 설치목적: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
- 3) 설치년도: 2017년
- 4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23년도 말 조성액 [㉠]	2024년도 조성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 [㉡] = [㉢] + [㉠]
	수입 [㉢]	지출 [㉣]	증감 [㉤] = [㉢] - [㉣]	
848,052,710	218,383,566	211,489,025	6,894,541	854,947,251

※ 충청북도,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청주·충주의료원은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.
- 법 제18조에 따라 운영은 사업 수익금, 보조금, 출연금,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할 수 있고,
 - 또한, 「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,
 - 본 계획안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을 위한 출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**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**

제18조(재원)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, 제17조에 따른 보조금·출연금 및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□ **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**

제7조의2(기금과 보조금 등) ③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, 충청북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청주·충주 의료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환자의 진료를 추진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한 만큼,
 - 이는 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8)에 따른 사업이자 공익적 사업에 포함되는 바, 충청북도의 본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절차 상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(동의)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먼저 득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본 2025년도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이자상환 지원의 경우, 출연계획안이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되었음.
 - 물론 두 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 시점은 지역개발 용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이 11월25일, 2025년 당초예산안은 12월11일 이지만,
 - 출연계획안의 가부(可否)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025년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었다는 점에서 법에 따른 사전 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했음.
 - 이에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8) 제7조(사업)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7.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

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을 위한 출연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 필요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절차상 2025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전에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